

18세기 쓰시마 번의 재판(裁判) 파견에 관해

: 1736년 오일잡물 교섭을 사례로*

이형주 _ 나고야대학 박사연구원

목 차

- I. 시작하며
- II. 재판 파견을 둘러싼 논의
- III. 재판의 파견과 교섭 양상
- IV. 마치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1736년에 있었던 오일잡물 교섭을 둘러싼 사전 논의와 실제 양상을 분석하여, 쓰시마 번이 조선과의 교섭에서 관수(館守)와 별도로 재판(裁判)을 파견했던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동래부 측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효과이다. 재판이 파견되면 동래부 측에서는 재판을 신속히 귀국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다음으로 조선 조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효과이다. 재판 파견 보고를 받은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の裁判役—日朝外交折衝における裁判役の役割を中心に—」(名古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博士論文, 2022)의 일부를 국역, 수정, 가필한 것이며, JSPS科研費 19K23106의 조성을 받은 것이다.

조선 정부에서는 해당 교섭에 대해 쓰시마 번이 중요시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섭이 종결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왜관의 상주 인원인 관수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18세기 중엽의 재판은 ‘사람’이 아닌 ‘직책’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조선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직책이 되어 있던 것이다.

주제어

재판, 사이한, 재판차왜, 왜관, 조일 관계, 조일 교섭

I. 시작하며

근세 쓰시마 번(對馬藩)이 부산의 왜관(倭館)으로 파견한 사자인 재판(裁判)¹⁾은, 쓰시마 번에서 파견되는 여타 사자들이 주로 형식적인 외교 의례만을 수행했던 것과 달리 조일 교섭의 실제적인 면을 담당하면서, 쓰시마의 조선 외교에 있어서 실질적인 추진역(推進役)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근세 조일 양국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이른바 ‘선린우호(善隣友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1)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재판’이란 법률용어로 사용되는 ‘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조선과의 교섭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쓰시마에서 사자로 파견한 직책의 이름이다. 사료에 따라 裁判差倭, 兩國幹事倭, 裁判(役), 催判(役) 등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한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재판’ 혹은 ‘재판차왜’로 표기했다. 본 연구에서는 ‘재판’으로 약기하도록 하겠다.

2)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50卷4號, 1968, p.84. 또한 쓰시마 번의 사료인 『和館事考』에서는 재판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에 대해 ‘단순히 본국(本國, 일본)에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선린(善隣)에 믿음을 세우는 까닭이다’고 설명하고 있는데(『裁判事考』, 『和館事考三』,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36, 소장문서번호: 4381), 이를 통해 재판이란 단순한 쓰시마 번 입장만을 대변하는 교섭자가 아닌, 양국 사이의 조정자라는 역할도 기대받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는, 교섭을 통해 갈등과 마찰을 원만한 해결로 이끌어 온 재판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재판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사 마사노리(長正統)³⁾는 재판이 남긴 업무일지인 『裁判記録』의 소개와 함께, 직무 내용, 기원, 피임명자의 신분 변화, 대리인 파견, 파견 절차 등 재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했으며, 근세에 파견된 재판의 목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시발점이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⁴⁾가 피임명자의 신분 변화에 관한 오사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언급했으며, 이즈미 조이치(泉澄一)⁵⁾는 쓰시마 번 당국이 번사(藩士)들에게 제공하는 ‘부조(扶助)’에 주목하여 재판의 임명에는 외교 능력보다 경제적 원조가 우선시되기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혜진(李惠眞)⁶⁾에 의해 재판의 왜관 장기 체류 문제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밝혀지기도 했으나, 이후 한동안은 재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근년에 들어 윤유숙(尹裕淑)⁷⁾이 재판의 한 분류인 간사재판(幹事裁判)⁸⁾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구체적인 활동을 자세히 검토

3) 長正統(1968).

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pp.181~185.

5) 泉澄一, 「對馬藩士の朝鮮使行と「扶助」について」, 『史泉』81卷, 1995.

6) 이혜진, 「17세기 후반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제8집, 1998.

7) 윤유숙, 「조선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제62집, 2018; 同,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제66집, 2019; 同, 「역지통신 교섭기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 검토」, 『향도부산』제43호, 2022.

8) 長正統(1968)는 재판을 다음 4종류로 분류했다. ①신사영송재판(信使迎送裁判): 통신사의 파견에 관한 여러 문제를 협의하고, 부산과 쓰시마 사이의 통신사 일행의 이동을 담당, ②역관영송재판(譯官迎送裁判): 막부와 쓰시마 번의 경조사 등을 위해 파견되는 문위행(問慰行)의 이동을 담당, ③공작미연한재판(公作米年限裁判): 무역대금으로 조선이 쓰시마 번에 지불하는 공목(公木, 면포) 대신 기간부로 쌀(公作米)을 지급하는 기간 연장 교섭을 담당, ④간사재판(幹事裁判): 이상의 3종류에 들어가

하고 있으며, 이형주(李炯周)⁹⁾가 오사의 연구를 일부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재판의 전반적인 활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즈미(1995)의 선행연구이다. 이즈미에 따르면, 쓰시마 번의 사자는 조선 측이 지급하는 쌀과 면포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번 당국이 번사를 사자에 임명함으로써 수입을 얻게끔 하는 것을 ‘부조(扶助)’라고 하며, 번사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부조의 정도와 순번 등을 예상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와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즈미는 왜관에 사자로 파견되는 재판의 임용 또한 이 ‘부조’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오사(1968)의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의 중요성¹⁰⁾’이라는 언급이나, 다시로(1981)의 ‘조선 사정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를 이용해야 했다¹¹⁾’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료에 뒷받침된 적절한 견해라고는 말하기 힘들지 않은가’라며 재고를 촉구했다.¹²⁾

먼저 이즈미의 지적대로 재판의 임용에는 번사들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는 측면이 고려되었던 것이 사실이므로,¹³⁾ 재판의 임용에서 ‘조선 사정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를 이용해야 했다’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즈미는, 이처럼 재판의 임용에서는 외교적 능력보다 경제적 요인이 고려된

지 않는 특별한 교섭 사항을 담당.

9) 이형주, 「18世紀の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對馬藩の裁判役」, 『名古屋大學人文學フォーラム』2號, 2019; 同, 「18세기 말 裁判役의 名代 파견에 대해」, 『한일관계사연구』 제74집, 2021; 同, 「一七世紀の裁判役—對馬藩と朝鮮との外交折衝擔當官—」, 『名古屋大學人文學フォーラム』5號, 2022a; 同,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の裁判役—日朝外交折衝における裁判役の役割を中心に—」, 名古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博士論文, 2022b.

10) 長正統(1968), p.86.

11) 田代和生(1981), p.185.

12) 泉澄一(1995), p.6.

13) 실제로도 『裁判記録』에서 임명 시의 기록을 보면, 피임명자가 번 당국에 재판 임명이라는 ‘커다란 부조(重キ扶助)’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답례를 올렸다는 기록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것이 사실인 이상, 재판은 내실이 동반되는 직책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쓰시마 번에서는 왜관에 관수(館守)¹⁴⁾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굳이 별도로 재판을 파견하여 조선과의 교섭을 담당케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¹⁵⁾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즈미의 지적은 근세 조일 외교에서 재판이 갖는 존재 의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재판에 관련된 연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의 중요성’과 같은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다면, 근세 조일 외교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재판에 관한 연구 또한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문제 제기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736년에 발생한 조선 정부의 일본인 표류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급 규정을 둘러싼 교섭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교섭에 관해서는 이훈(李薰)¹⁶⁾이 동래부(東萊府)의 왜학역관(倭學譯官, 일본어 통역 겸 하급 외교관)과 조선 조정의 고관 사이에 존재했던 사적 관계에 주목하고, 이 ‘사적 루트’를 통한 교섭의 존재를 밝혀낸 연구가 있다.

14) 왜관을 통괄하는 직책으로, 1636년 이른바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 후에 조선 외교에 대한 번주(藩主) 권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처음 왜관에 파견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2년 임기로 활동했다(長正統, 1968, pp.75~77).

15) 실제로 쓰시마 번에서 메이지 신정부에 그동안의 조선 외교의 대략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료 「兩國交際之節目大略」(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931, 소장문서번호: 6118)에서도, 재판에 대해 ‘쓰시마에서 재판을 파견하고, 양국 사이의 여러 일을 맡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16) 이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류민에 대한 雜物(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왜곡」,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 1998.

본 연구가 위의 사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부분은, 교섭 담당자를 둘러싼 사전 논의와 실제 교섭 과정이다. 위의 분석을 통해 교섭 담당자로서의 관수와 재판관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조일 교섭에서 재판관이 수행했던 고유 영역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얻은 결과를 통해 ‘왜 조일 교섭에서 재판관이 중요했는가’, 그렇다면 ‘조선 사정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가 아님에도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¹⁷⁾

II. 재판 파견을 둘러싼 논의

쓰시마 번의 사자가 왜관에 파견되면,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 측에서 ‘오일잡물(五日雜物)’이라는 것을 지급했다.¹⁸⁾ 이는 조선 측이 사자 개인에게 보내는 식료품 등의 잡물을 말하는 것으로, 5일마다 지급되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조선어 발음이 변형되어 ‘五日’을 ‘오이리(おいり)’로 발음했다고 한다.¹⁹⁾ 또한 사자와 마찬가지로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 표류민에 대해서도 위의 접대 예에 따라 체류 기간 동안 오일잡물이 지급되었다.²⁰⁾

17) 18세기에 들어선 뒤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파견된 19세기 중엽까지, 재판은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왜관에 파견되면서 조선 관련 업무 경험을 쌓는 형태가 아닌, 한 사람이 한 차례의 파견만으로 교대되는 형태가 정착되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대부분의 재판은 초임자였다. 이는 18세기 초부터 『裁判記録』이 작성되기 시작하여, 간단하게 선임자의 업무 기록을 참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었다(이형주, 2022a). 본 연구의 사례는 위의 임용 형태가 정착된 후, 상대적으로 복잡한 교섭 사안의 해결을 위해 파견되는 간사재판의 첫 사례이다. 대부분의 재판들이 초임자들이었음에도 난해한 교섭 사안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 이훈(1998)의 주 6에 따르면, 사료에 따라 ‘日供雜物’, ‘五日糧饌’, ‘五日糧’, ‘五日糧’, ‘五日下程’, ‘五日次’ 등의 명칭으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일잡물’을 사용한다.

19) 田代和生,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p.130.

20) 이훈(1998, p.8). 이하, 재판 파견을 둘러싼 논의와 교섭의 전개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데 1734년 11월 24일, 오일잡물에 관한 조선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왜관에 전달되었다. 지금까지 오일잡물은 표류민의 체류 일수에 따라 5일마다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체류 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5일분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정을 왜관에 전달한 왜학역관들²¹⁾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발단은 작년 조선 정부에서 지방 순찰을 위해 파견한 암행어사의 보고였다. 암행어사가 경상도의 해변을 순찰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 표류민에게 지급되는 오일잡물을 조달하기 위한 지역민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 더욱이 표류민과 지역민 사이에 밀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앞으로는 오일잡물을 체류 일수에 상관없이 5일분만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개정을 요청에 건의했고, 조정에서도 이를 승낙했다는 것이다.²²⁾ 구호물자(오일잡물)를 제한함으로써 일본인 표류민이 표착지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밀무역을 방지하는 것이 조선 정부가 오일잡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은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왜관에서는 이 일방적인 방침 전환에 크게 반발했다. 마침 이때 공작미연한재판²³⁾으로 쓰시마에서 왜관으로 이동하고 있던 아사이 요자에몬

밝히지 않는 한 해당 논문을 참조했다.

- 21) 왜관을 상대하는 동래부에는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왜학역관들 중에서도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임명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동래부와 왜관을 출입하며 양자를 중개했다. 이날은 훈도는 현덕윤(玄德潤)과 별차 유극신(劉克愼) 혹은 유극화(劉克和), 다른 용무로 동래부에 파견되어 있던 왜학역관 박춘서(朴春瑞)가 왜관을 방문했다.
- 22)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分類紀事大綱二十四』,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54, 소장문서번호: 4520(이하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로 약기), 1734년 12월 3일 자 서장.
- 23) 주 8의 공작미 지급 기간 연장을 교섭하는 재판으로, 공작미 지급 기간 만료에 따른 교섭 시기를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쓰시마 번에서도 미리 임명해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작미연한재판으로 임명된 아사이는 오일잡물 교섭을 사명으로

(淺井與左衛門)이, 1734년 11월 12일에 지세포(知世浦)에 표류한 뒤, 18일에 옥포(玉浦)를 거쳐 25일이 되어서 왜관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아사이가 지세포와 옥포에 체류하는 동안 초과로 지급된 오일잡물을 돌려싸고 양국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²⁴⁾ 이는 즉각적으로 쓰시마 번으로 보고되었으며, 번 당국에서는 관수 마쓰오 모쿠(松尾杓)와 재판 아사이에게 오일잡물 신규정을 구례대로 되돌리기 위한 교섭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²⁵⁾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고, 1735년 10월 쓰시마 번 당국은 아사이에게, 동래부사(東萊府使, 동래부를 관할하며 왜관 업무를 담당)²⁶⁾가 조정에 규정을 복귀시키기 위한 계문(啓聞)을 올려야 하며, 가부에 상관없이 이에 대한 조정의 정식 답변이 있을 때까지는 귀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²⁷⁾ 이에 아사이가 은밀히 별차(別差)²⁸⁾에게 어떻게 하면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리고 신규정이 구례대로 복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별차는 쓰시마 번에서 정식으로 서간을 보내와서 교섭하거나, ‘별도의 사자(別使)’를 파견해서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²⁹⁾ 이후 별도

파견된 것이 아니었다.

24)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4년 12월 6일 자서장.

25)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4년 12월 16일 자서장. 근세의 조일 교섭은 왜관 측 교섭 담당자가 조선 측 고관들과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왜관을 출입하며 동래부와 왜관을 중개하는 왜학역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래부사가 경상감사(慶尙監司, 동래부사를 지휘 및 감독)를 거쳐 조정에 계문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마쓰오는 다음 해인 1735년 1월 12일에 중풍을 이유로 관수 사임을 요청하며 교섭에서 일찍이 이탈했다(『毎日記 九』,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5년 1월 12일).

26) 최명상(崔命相), 1734년 7월 동래부사로 취임했으나 1736년 4월 임기 중에 병사.

27)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5년 10월 4일 자서장.

28) 신영래(愼榮來), 1735년 윤 3월에 신임 별차로 취임했다.

29)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5년 10월 11일 자

의 서간이나 사자 없이 동래부사가 왜관 측의 요청대로 조정에 계문을 올리고,³⁰⁾ 12월에는 조정의 답변이 도착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규정 복귀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³¹⁾ 결국 아사이는 규정을 구레대로 되돌리지 못한 채, 추후에 교섭을 재개하면 자신도 이에 협력하겠다는 동래부사의 의향을 확인한 뒤, 이 부분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귀국하겠다는 뜻을 번 당국에 내비쳤다.³²⁾

아사이는 애초에 오일잡물 교섭을 목적으로 파견된 재판이 아니었으며, 재판으로서의 본 업무인 공작미 지급 기간 연장 교섭도 1735년 8월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이상 왜관에 체류하면서 오일잡물 교섭을 계속할 명목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사이에 의한 교섭이 타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왜관에서는 정식으로 오일잡물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자를 파견하여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이 대두하게 되었다.

해가 바뀐 1736년 1월, 아사이의 도선주(都船主, 사절의 공무를 담당)로 왜관에 체류하고 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향후 교섭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2번에 걸쳐 번 당국에 제출했다. 우선은 1월 10일 자 의견서의 일부를 보도록 하자.

서장.

- 30)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5년 10월 27일 자 서장. 同 25일 훈도와 별차가 왜관을 방문하여, 동래부사가 경사감사와 계문에 대해 상담했지만, 경사감사는 계문을 불허하고 있었고, 결국 동래부사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날 아침 계문을 올렸다고 전했다.
- 31)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5년 12월 14일 자 서장.
- 32)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5년 12월 29일 자 서장.

【사료 1】³³⁾

제1조

一. 이는 여타 일과 다르므로, 재판이 아니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조

一. (A)관수가 교섭하면, 이래저래 훈도가 동래부사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전달해도 계문을 올리지 않거나 할 것입니다. (B)가령 계문을 올려도, 쓰시마 번에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분명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료의 제약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쓰시마 번 당국에서는 지난 해 10월에 있었던 별차의 제안을 받아, 별도의 사자를 파견하지 않고 우선 관수를 교섭에 임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으며, 이 방침이 왜관에 전달되어 있던 것으로 추측된다.³⁴⁾ 이에 대해 아메노모리는 제1조에서 이 사안은 관수가 아닌 재판을 통해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제2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관수를 통해 교섭을 진행하면 훈도가 동래부사에게 왜관 측의 의향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거나, 훈도가 전달한다고 해도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A)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설령 동래부사가 계문을 올려준다 해도 쓰시마 번이 오일잡물에 관한 사안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조선 정부에 인식되어 버리면 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것(B)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별차가 제안한 ‘별도의 사자(別使)’로서 구체적으로 재판을 파견

33)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1월 10일 자 서장. 이하 사료 인용에서 국역, 문장부호, 부가설명, 기호, 밑줄 등은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인용자에 의함.

34) 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정식 서간을 보내거나 별도의 사자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별차의 제안은 1735년 10월 11일 자 서장을 통해 쓰시마 번 당국에 보고되었다(각주 29의 서장). 조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센카타(朝鮮方)의 업무 일지를 보면, 同 24일에 ‘관수와 재판이 보낸 서장과 물건이 배편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朝鮮方日帳〈合十三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699, 소장 문서번호: 4163, 1735년 10월 24일), 각주 29의 서장은 이날 번 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도록 제안한 것은, 쓰시마 번이 교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즉, 별도의 사자로 전례에 없는 사자를 파견하면, 조선 측으로부터 정식 사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사자의 파견 문제로 시간을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은 상례적인 사자이기 때문에 왜관으로 파견되어도 조선 측에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불필요한 문제의 발생을 회피하고 즉각적으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더욱이 동래부 측에 신속한 계문을 재촉함과 함께 조선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재판이라고 아메노모리는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아메노모리는 1월 15일 자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³⁵⁾ 다음은 그 일부이다.

【사료 2】³⁶⁾

제1조

- 一. 우선 관수가 교섭하도록 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도 마무리되면 딱히 큰 지장도 없겠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의 지출까지 생각하기에 우선 관수를 통해 교섭하신다는 뜻을 그쪽에 전하면, 그쪽의 생각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관수를 통해 교섭하시고 마무리되면 더더욱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5) 관수의 업무일지를 보면, 1736년 1월 10일과 15일 사이에 왜관에서 쓰시마로 선박이 출항한 것은 13일 아침 1회뿐이었다(『每日記 六』,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또한 조센카타의 업무일지를 보면, 1월 13일과 15일 사이에 왜관으로 서장을 보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日帳〈合十二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699, 소장문서번호: 4164). 따라서 【사료 1】의 의견서가 13일 배편으로 당일 바로 쓰시마 번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도, 【사료 2】는 아메노모리가 【사료 1】에 대한 번 당국의 지시를 받은 후에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6)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1월 15일 서장.

제2조

一. (A)관수를 통해 교섭하면, 가부간에 답변이 1개월, 2개월, 내지 3개월, 4개월 안에라도 있다면 다행인 일인데, 이번 교섭이 시작된 것은 재작년의 일이지만, [동래부 측에서]이래저래 말을 하여 작년 내내 연기되어 해결되지 않았는데, 관수를 통해 교섭하시면 올해 내내 [시간이]걸리고, 내지는 내년에도 해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세도 빠지고, 교섭에서 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

一. (B)이번 오일잡물에 대한 일에 관해 [조선 조정으로부터]회하(回下)가 있기까지 [귀국을]삼가겠다고 재판이 작년 10월 25일에 말하고, 그로부터 50일이 걸려서 회하가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수를 통해 교섭하셔서 우선 쉽게는 회하도 없을 것이고, 이래저래 연기되어 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내내 걸릴 것이며, 또는 내년까지도 [연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사료의 제1조에는 교섭에 대한 번 당국의 방침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즉, 우선은 관수가 교섭에 임하고, 그것으로 교섭이 진척되지 않으면 재판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아메노모리도 일단은 재판 파견에 따른 조선 측의 접대 부담을 배려하여 관수가 교섭에 임했다고 조선 측에 전달하면 조선 측의 반응도 나쁘지 않을 것이며, 관수만으로 교섭이 해결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메노모리의 본심은 역시 처음부터 재판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2조에 따르면, 관수가 교섭에 임하는 경우, 동래부 측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기 때문에 1~2개월 내지는 3~4개월 안에 조선 정부의 답변이 도착하면 다행인 일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교섭이 이미 올해까지 연기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교섭이 결판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교섭에서의 기세가 빠져서 결국에는 교섭에 지게 될 것이라고도 하고 있다(A). 그리고 제3조에 의하면 재판 아사이가

작년 10월 25일에 동래부 측에 조선 정부로부터의 답변이 도착할 때까지 귀국하지 않겠다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오기까지 50일이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수가 답변을 요구해도 조선 정부는 간단히 응해주지 않을 것이며, 자칫하면 내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고 있다(B).

요컨대 아메노모리는 관수가 교섭에 임하는 나름의 장점도 있으며, 관수선에서 교섭이 마무리되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관수가 교섭에 임하는 단점, 즉 동래부와 조선 조정의 신속한 움직임을 끌어내지 못하고, 교섭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위의 의견서들에 대한 번 당국은 답변 내용은 사료의 한계로 알 수 없지만, 아메노모리는 다음 달인 2월 25일 자로 다시 한번 의견서를 제출했다. 밑의 사료는 그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 내용을 통해 볼 때 앞선 의견서들에도 불구하고, 번 당국에서는 관수를 우선적으로 교섭에 임하게 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은 것 같다.

【사료 3】³⁷⁾

(B)재판이 귀국한 뒤 그쪽이 말하는 바를 잘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이 일을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판의 귀국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시면 일을 중하게 여기신다고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전에 재판이 은밀히 별차에게 문의했을 때도, 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 지시하지 않는다면 계문도 없을 것이라 했고, 이번 훈도와 별차가 동래부사의 의중을 듣고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에도, 다시 사자를 통해 교섭하시면 [동래부사]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 속뜻은, 조정에서 일단 결정된 일이니 보통 일로는 다시 원래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쪽도 이래저래 이 일에 대해서는

37)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2월 25일 자 서장.

쓰시마 번에서 그대로는 두지 않고, 다시 사자를 파견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수를 통해 교섭하신다면 [교섭을]내팽개쳐 두는 것이 될 것입니다…(A)관수가 선불리 [동래부 측과]교섭하게 되어도, 그래서 [동래부 측에서 시간을]점점 늦춰두어서 연기될 뿐으로, 결국 교섭에서 지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 일을 오로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일입니다. 이상.

여기서도 아메노모리는 처음부터 재판을 교섭에 임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메노모리는 재판 아사이가 곧 귀국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래부 측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그 후에 다른 사람을 사자(재판)로 파견하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재교섭에 임하면 쓰시마 번에서 오일잡물에 관한 사안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조선 측에도 비추어질 것이라 한다. 동래부 측은 훈도와 별차를 통해 별도의 사자를 통해 교섭을 재개하지 않으면 계문을 올릴 수 없다며 새로운 사자의 파견을 요구해왔다. 조선 조정에서 일단 오일잡물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린 이상 어지간한 일로는 바로 결정을 되돌릴 수도 없으니, 새로운 사자의 파견을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B). 즉 새로운 재판을 파견함으로써 조선 정부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조선 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관수를 교섭에 임하게 해도 교섭이 길어질 뿐으로, 결국에는 교섭에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다(A).

이상 세 건의 의견서에 보이는 아메노모리의 주장은, 재판의 파견을 통해 교섭에서 동래부 측의 신속한 대응을 끌어낼 수 있으며(【사료 1】~【사료 3】의 A), 이와 함께 조선 정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시키고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사료 1】~【사료 3】의 B)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관수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메노모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재판의 파견과 교섭 양상

처음부터 재판을 교섭에 임하게 하고 싶었던 아메노모리의 기대와는 달리, 번 당국은 ‘先 관수, 後 재판’이라는 교섭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1736년 3월 1일 자 서장을 통해 번 당국은 관수 시마오 하치자에몬(嶋雄八左衛門, 마쓰오 모쿠의 후임, 1735년 3월 20일 관수직 인계)에게 위의 교섭 방침을 전달하고, 귀국을 목전에 두고 있던³⁸⁾ 재판 아사이의 교섭을 관수 시마오가 인계받도록 지시했다.³⁹⁾ 하지만 관수에 의한 교섭도 지지부진했으며 결국에는 시마오도 새로운 재판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⁴⁰⁾ 이에 번 당국에서도 새롭게 재판을 파견하기로 하고, 4월 23일 자 서장으로 이 결정을 시마오에게 알렸다.

【사료 4】⁴¹⁾

(A)아사이 요자에몬이 귀국한 후, 서둘러 다른 재판을 통해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재판은 그쪽의 조작(造作)이 되기 때문에, 우선 귀하가 교섭하시고 [동래부 측에서] 납득해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했으므로 [관수 시마오가] 계속 교섭하시라고 지시했지만, (B)지금 형세로는 왜관 상주 인원(居成之人)이 교섭해서는 언제까지나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 용무에 관해 우치노 이치로자에몬을 재판으로 임명하여, 다음 달 중순에 이곳에서 승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8) 아사이는 1736년 3월 5일 배편으로 귀국했다(『每日記 六』,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6년 3월 5일).

39)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3월 1일 자 서장.

40)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3월 15일 자 서장 및 同 4월 12일 자 서장.

41)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4월 23일 자 서장.

위의 서장에 따르면, 쓰시마 번 당국에서도 아사이가 귀국한 후 곧바로 재판관을 파견하려 하고 있었지만, 재판은 조선 측의 ‘조작(造作)’, 즉 조선 측의 접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관수를 교섭에 임하게 했다고 한다(A). 번 당국에서 ‘先 관수, 後 재판’이라는 교섭 방침을 고수했던 것은, 연달아 재판관을 파견함으로써 늘어나는 조선 측의 접대 부담을 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교섭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관수와 같은 ‘왜관 상주 인원(居成之人)’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교섭이 진척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으로 우치노 이치로자에몬(内野一郎左衛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한다(B).

여기서 쓰시마 번 당국은 관수가 왜관 상주 인원이라는 점을 들어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으로 교섭을 진행해야만 교섭이 신속하게 진척될 것이라는 아메노모리의 주장은, 바로 재판이 관수와 같은 왜관 상주 인원이 아닌 별도로 파견되는 사자였다는 점에 유래했던 것으로 보인다(후술).

재판 우치노가 왜관에 도착한 것은 1736년 6월 29일이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우치노는 왜학역관들을 상대로 오일잡물 교섭에 착수한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자.

【자료 5】⁴²⁾

어제 혼도 和仲 朴正과 별차 大卿 李判事⁴³⁾가 입관(入館)했기에, [우치노 본인이]말하길, “(A)용무가 있어서 이번에 제가 파견되었는데, 다례(茶禮)가

42)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1736년 7월 8일 자서장.

43) 박춘서와 이창기(李昌基), 1736년 4월 18일, 각각 신임 혼도와 별차로 동래부에 착임했다(『每日記 七』,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6년 4월 20일).

준비되지 않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서둘러 다례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훈도가 말하길, “(B)얼마 전 착선하셨을 때 서둘러 수본(手本)을 올렸고, 동래부사께서 경상감사께 참장(尙狀)을 올렸으니, 접위관(接慰官)이 바로 임명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파견되신 용무는 표류선의 오일잡물 교섭에 관한 용무라고 일찍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쓰시마 번의]항의도 있던 일이기 때문에 동래부사께서 서둘러 계문을 올릴 것입니다. 혹은 경상감사께서도 계문을 올릴 것입니다. 그 후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알게 되는 대로 서둘러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우치노는 훈도와 별차에게 처음으로 교섭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다만 우치노는 자신이 파견된 정확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은 채, 서둘러 다례(茶禮)를 준비해주도록 요청했다(A). 재판이 왜관에 도착하면 우선 다례라는 접대 의식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통례적인 절차였기 때문이다.

이에 훈도는 우치노가 왜관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곧바로 동래부사⁴⁴⁾에게 자신이 보고를 올렸으며, 동래부사 쪽에서도 경상감사에게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다례를 거행하기 위한 접위관(接慰官, 접대 담당자)의 지정도 서둘러 끝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한 훈도는 우치노가 재판으로 파견된 이유는 오일잡물 교섭 때문이라고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오일잡물에 관한 문제는 이전부터 쓰시마 번에서 항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니, 동래부사가 서둘러 계문을 올릴 것이며, 경상감사도 계문을 올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다(B).

위에서는 재판의 파견과 동시에 동래부 측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44) 1736년 4월 22일 동래부사 최명상이 병사하고(『每日記 七』,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6년 4월 24일), 同 6월 21일 오명서(吳命瑞)가 신임 동래부사로 동래부에 착임했다(『每日記 八』,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6년 6월 23일).

알 수 있다. 상례적인 사자인 재판의 도착을 서둘러 조정에 보고하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으며, 재판이 도착한 이상 신속히 교섭에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귀국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후술).

그리고 실제로도 우치노의 파견은 즉시 조선 정부로 보고되었다. 우치노가 왜관에 도착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20일, 조선 조정에서는 우치노의 파견과 오일잡물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료 6】⁴⁵⁾

(A)김재로가 아뢰기를, “이것은 동래 부사 오명서의 장계입니다. 재판차 왜(裁判差倭)가 오일잡물을 다루기 위해 나왔으므로 접위관은 인근 고을의 수령으로 차정(差定)하도록 도신에게 보고하였고, 연례단(宴禮單)의 잡물(雜物)은 해당 조(曹, 예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마련하여 내려보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지금 훈도와 별차를 엄히 꾸짖고 타일러 막고 있다는 실상을 아뢰었습니다. 원래의 장계는 예조가 계하받았는데,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예전부터 재판차왜가 오면 담당한 일이 무엇인지 막론하고 우선 접대한 전례가 있습니다. 변방의 실정과 관계된 일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쭙어 처리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재판차왜가 다루는 일은 시종일관 굳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왜를 우선 접대한 전례가 이미 있으니, 비록 곤장 물리치고 애당초 접대하지 않으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규례대로 접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전례가 있으니, 전례대로 접대하라고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 이상은 거조를 내었다. - (B)김재로가 아뢰기를, “그러나 이 일은 끝내 답답하니,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류한 왜인에게 5일 치 이외에는 양식과 반찬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비록 답답한 듯하지만, 왜선(倭船)은 으레 바람이 순하지 않다는 핑계로 일부러 지체하며 우리나라의 간사한 백성과 몰래 거래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그 기한을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인들은 ‘너희 나라 사람이 우리 땅에 표류해 오면 원래 날 수를 정해서 양식을 지

45) 『承政院日記』, 1736년 7월 20일. ‘한국고전종합DB’의 국역을 인용 및 수정했다.

급하는 일이 없는데, 우리 배가 너희 나라에 표류해 올 때만 어찌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니, 이 말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5일의 기한을 정한 뒤 표류한 왜인은 모두 5일 내에 아무쪼록 관소(館所)로 돌아가 정박하도록 이미 시험하여 효과가 있었으니,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무 답답하다. 지킬 거면 금석처럼 굳게 지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왜인과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정언섭이 아뢰기를, “오늘 이후로 섬나라 오랑캐와 약속하여 약조를 정하면 필시 훗날 정해진 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우선 동래부사가 오일잡물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재판이 도착했음을 서장으로 보고하고, 재판의 접대에 필요한 접위관 지정과 예물을 보내주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정에서는 교섭 사안에 상관없이 재판이 파견되면 접대를 허락하는 전례에 비춰, 우치노의 접대를 인정하기로 했다(A). 재판은 상례적인 사자였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그 파견을 무시할 명분이 없던 것이다. 이어서 오일잡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조정 내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가져오는 유익한 효과와 이를 관철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날의 논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후로 섬나라 오랑캐와 약속하여 약조를 정하면 필시 훗날 정해진 법이 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B). 아메노모리가 주장한 것처럼([사료 1]~[사료 3]의 B), 재판의 파견을 계기로 쓰시마 번에서 해당 사안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조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섭에 대해 동래부 측이 재빠른 대응에 나서고, 조선 조정에서는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치노가 해야 할 일이란, 동래부 측과 교섭을 진행하여 동래부사가 교섭 내용을 추가 계문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다음, 오일잡물 규정을 구례대로 되돌린다는 조선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기다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태로 오일잡물 교섭에 관한 계문은 연기되었다. 7월 3일 왜관의 일본인들이 무단으로 왜관을 벗어나 시위 행동을 벌였고, 8월 16일에는 관수가 번 당국의 지시를 받아 인삼 수출량 확대를 동래부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동래부사로서는 이 두 건에 관한 계문을 올리는 것이 선결 문제였다.⁴⁶⁾ 혹은 우치노가 왜관에 도착했을 때 재판이 오일잡물 교섭을 위해 도해했다는 내용을 이미 조정에 보고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이 내려올 때까지는 교섭에 관한 추가 계문을 보류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교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10월 19일의 일이었다. 이날 동래부사는 쓰시마의 연례송사(年例送使, 쓰시마 번이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사자)에게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왜관을 방문했다. 우치노는 동래부사에게 선물을 증여한다는 구실로 조선통사(朝鮮通詞, 조선어 통역 겸 하급 외교관) 두 명을 동래부사에게 보내고, 이때 그 두 명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달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동래부사와의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우치노의 주장을 요약하면 ‘오일잡물은 인명에 관련된 것이므로 중요한 일이니’, ‘하루빨리 추가로 계문을 올려서 서둘러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⁴⁷⁾ 다음은 이날의 교섭을 우치노가 번 당국에 보고한 서장의 일부이다.

【사료 7】⁴⁸⁾

동래부사가 위 두 사람에게 말하길…”(A)한성에서 [추가 계문에 대한]답

46) 『五日糧裁判記錄 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36년 8월 19일.

47) 『五日糧裁判記錄 二』,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1736년 10월 19일(이하 『五日糧裁判記錄 二』로 약기).

48) 『五日糧裁判記錄 二』, 1736년 10월 19일.

변이 도착하면 재판은 서둘러 귀국하시겠습니까.”라고 하기에, 두 사람이 말하길, “용무가 무사히 끝나면 이유없이 체류할 도리가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용무를 마치고 귀국하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추가 계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일 사이에 올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B)동래부사가 답하길, “그 일은 2~3일 사이든 그 이후든 살펴보고 추가 계문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분명 이번 용무를 마쳐도 다시 다른 용무를 들어 체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투로 들렸으므로, 도시사부로(俊三郎, 조선통사)가 동래부사에게 말하길, “(C)방금 전에 부사께서 말씀하시길, 재판이 이 일로 파견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⁴⁹⁾ 그렇다면 부사께서도 서둘러 한성에 반달(返達, 추가 계문)을 올리셔서 용무를 무사히 끝마치시고, 재판께서 하루빨리 귀국하시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재판께서도 벌써 70에 가까운 노인인데, [번 당국으로부터]지시받은 용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귀국할 날을 모르므로, 주야로 용무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으니, 부사께서도 사정(私情)을 생각하시어, 재판께서 하루빨리 귀국하시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하자, 동래부사가 말하길, “(D) 재판께서 노인이고 하루빨리 용무가 마무리되어 귀국하고자 하신다는 것은 그럴만한 일입니다. 한성까지 왕복은 멀기 때문에 자연히 늦어질 것이지만, 곧 가부간에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위 사료에서 동래부사는 조선통사에게 추가 계문에 대한 조선 정부의 답변이 있으면 우치노가 바로 귀국할 것인지를 물었다(A). 이에 대해 조선통사는 교섭이 원만히 해결되면 이 이상 우치노가 왜관에 체류할 명분도 없으며, 우치노 본인도 하루빨리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추가 계문을 올려주도록 요청했다. 이때 동래부사는 추가 계문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오일잡물 교섭이 해결된 뒤에도 우치노가 다시 여러 구실을 들어 왜관에 계속 체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들렸다

49) 별도의 사자를 통해 재교섭이 이루어지면 본인도 협력하겠다고 한 동래부사 최명상이 병사하고, 신임 동래부사 오명서가 착임한 상태였다.

고 한다(B). 동래부사의 의중을 파악한 조선통사는, 우치노를 귀국시키기 위해서는 동래부사가 추가 계문을 올려서 교섭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치노 본인도 빠른 귀국을 희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동래부사의 협력을 요청했다(C). 이에 대해서는 동래부사도 납득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성과 동래부 사이는 거리가 멀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계문에 대한 답변이 도착할 것이라고 답했다(D).

여기서 동래부사가 추가 계문을 올리기로 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치노가 조선 정부로부터 답변이 있는 대로 서둘러 귀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조선 측에서는 재판의 파견을 거부하기가 어려웠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파견된 이상에는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켜서 접대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재판이 왜관에 장기간 왜관에 체류하게 되면, 단기간에 귀국시키지 못한 동래부의 관계자들이 문책받기도 했으며,⁵⁰⁾ 실제로 전임 동래부사도 우치노의 전임자인 아사이의 장기 체류 문제로 문책을 받은 일이 있었다.⁵¹⁾ 동래부사로서는 우치노의 장기 체류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동래부사는 오일잡물 문제에 관한 조선 정부의 답변만 있다면 서둘러 우치노를 귀국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마자 추가 계문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빠른 귀국을 조건으로 동래부사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애초부터 왜관의 상주 인원인 관수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일찍이 아메노모리가 주장한(【사료 1】~【사료 3】의 A) 재판의 파견을 통해 교섭에서 동래부 측의 신속한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이 점을 상정해 두고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50) 이해진(1998), p.34.

51) 『承政院日記』, 1736년 2월 10일.

위의 교섭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0월 26일, 동래부 측에서는 본격적으로 추가 계문을 올릴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은 저녁에 훈도⁵²⁾가 재판의 거처를 방문했는데, 다음은 그때의 기록이다.

【사료 8】⁵³⁾

저녁에 훈도가 입관해서 통사를 통해 말하길, “최근 일특송사(一特送使, 지난 19일의 연례송사)의 봉진연석(封進宴席, 지난 19일의 연회) 때 전어관(傳語官, 조선통사)을 통해 말씀하신, 귀하께서 [번 당국으로부터]지시받으신 용무에 관해, 오늘 [동래부사로부터]저희에게 전령(傳令)이 내려왔으므로 입관했습니다. 지장이 없으면 뵙고자 합니다.”라고 하기에, “오도록 하십시오.”라고 답변했더니, 곧이어 훈도가 나와서 [조선통사]오다 시로베에(小田四郎兵衛), 아비루 도시사부로(阿比留俊三郎)를 통해 말하길, “(A)성신사이(誠信之間)에 있어 표류선에 식량을 지급하는 일을 5일로 한정할 수 없지만, 쌍방의 아랫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 않도록 신칙(申飭)하기 위해 [조선 조정에서]명령한 일이니, 서둘러 귀국하시라고 전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최근 대청(大廳, 연회가 열리는 곳)에서 전어관들이 동래부 사께 자세히 답변을 요청하셔서, 위의 내용을 계문으로 올리기로 결정되어 있지만, 따로 왜관으로 가서 [추가 계문과 별개로 전령에 대해]귀하게 말하도록 지시받았기 때문에 전령을 지참했습니다.”라고 하기에, 제가 답하길, “(B)최근 이쪽 전어관이 자세히 답변을 요구하여, 곧 해결되도록 계문을 올리시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하지만]그 전령의 내용을 들어 보면, 재작년부터 쌍방이 논의한 것이, 지금 무익한 것을 논했던 듯이 들립니다. 더욱이 위 전령에도 저의 귀국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좀처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한 [추가 계문에 대한 조선 조정의]답변을 받지 않으면 귀국하지 않을 생각이니, 서둘러 한성으로 [지난 8월 계문에 대한 조정의 답변에 대해 추가 계문으로]답변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엄책했더니,

52) 김정균(金鼎均), 1736년 9월 16일 신임 훈도로 동래부에 착임했다(『每日記 九』,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1736년 9월 17일).

53) 『五日糧裁判記錄 二』, 1736년 10월 26일.

훈도가 말하길, “모두 맞는 말입니다. (C)부사께서도 처음부터의 논의가 성신 사이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와 논의하고, 그 답변 내용으로 계문을 올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귀하에게 이유 없이 귀국하시라고 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풍속으로 ‘재판에게 이렇게 양역을 통해 말했더니 재판이 또한 이렇게 말했다’고 계문을 올리기 위해 전령에 쓴 것입니다.”…[다시 우치노가]훈도에게 말하길, “추가 계문은 이번 달 안에라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최근 수영(水營)의 지휘관(地頭)이 교대되므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개시(開市, 왜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무역)에 시간을 써야 하며, 혹시 그사이에 부특송사(副特送使, 연례송사의 일종)가 밑에서 왜관에 도착하면 좀처럼 여유가 없으니, [오늘 일에 대해]자세히 수분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D) 다음 달 초순은 여유가 있으니 자세히 수분을 올려서 그 내용으로 서둘러 계문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 훈도가 우치노를 방문한 이유는, 지난 19일에 조선통사를 매개로 이루어진 교섭에 관한 동래부사의 공식 문서(전령)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동래부사의 전령은 우치노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다. 즉, 양국의 성신 관계에 있어 표류선에 식량을 5일분만 지급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이 새로운 규정은 표류민과 지역민 사이의 밀무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우치노는 바로 귀국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지난 19일에 있던 일을 내용으로 계문을 올리는 하겠으나, 이와는 별개로 우치노에게 전령의 내용을 전달하라고 훈도에게 지시했다고 한다(A). 결국 오일잡물에 대한 신규정은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우치노는 추가 계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서둘러 귀국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치노는 일단 계문을 올려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지금까지의 교섭이 무의미한 것 같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은 조선 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이 없는 한 귀국하지 않을 것이니,

서둘러 조정으로 추가 계문을 올려야 한다며 훈도를 엄하게 꾸짖었다(B).

동래부사가 교섭에 대해 위와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한, 약속대로 계문을 올린다 한들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래부사가 더욱 효과적인 계문을 올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훈도에 따르면, 사실은 동래부사도 이전부터 성신 관계에 있어서 표류민에게 식량을 5일분만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위의 전령을 작성해서 재판과 논쟁하고, 이에 대한 우치노의 반박 내용을 계문에 실을 생각이었다고 한다. 또한 전령에서 동래부사가 우치노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한 것도, 이에 대한 우치노의 반응을 계문에 신기 위험이었다고 한다(C). 요컨대 동래부사는 우치노의 발언을 이용해서 신규정을 구례대로 되돌리기 위한 자세한 논거를 확보하고, 재판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교섭의 신속한 타결과 함께 우치노의 빠른 귀국을 노리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추가 계문은 '다음 달(1736년 11월) 초순'에 훈도가 동래부사에게 자세히 수본을 올린 다음, 동래부사가 이를 토대로 올리기로 결정했다(D).

이렇게 우치노의 귀국을 위해 동래부 측이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교섭에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⁵⁴⁾ 이와는 별개로 한성에서도 교섭 종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은 11월 8일에 훈도가 은밀히 전달한 한글 편지를 왜관 측에서 번역한 것이다.

54) 이훈(1998, p.40)은 10월 26일의 교섭에 대해 동래부사가 '조정에 계문하는 대신 훈도와 별차편에 전령을 보내와서 동래부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라고 평가했지만, 이는 【사료 8】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왜관 측의 반박 내용을 추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계문을 올리기 위해 우치노를 일부러 자극한 것이었다.

【사료 8】⁵⁵⁾

평안하십니까. (A)그런데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좌의정께 자세히 말해 두었고, 또한 제 종제(從弟)가 의원(醫員)으로 그분께 아침저녁으로 출입하고 있으므로, 위의 제 종제를 통해 재판의 용무가 모쪼록 추가 계문이 필요 없게끔 조정(公議)에 말씀해 주시도록 말했는데, 살펴본 다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지난달 20일쯤 한성의 위 종제로부터 답변이 있었고, 그때 [조선통사]시로베에에게도 [위 내용에 대해]이야기한 다음 기다리고 있었는데, (B)어제 저녁 한성에서 파발(飛脚)이 도착해서 [종제가]다시 말하길, “지난달 25일 인견(引見)이 있었을 때 좌의정께서 말씀하시길, ‘오일잡물은 구례대로 하시고, 신법(新法)은 무효로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후 국왕께서도 틀림없이 허용하신다는 뜻이 내려와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국(備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라고 했으니, 오늘 내일 안에 동래부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새벽에 [왜학역관의 집무소에서 동래부로]올라갔는데, 우선 기쁜 일이므로 알려드립니다. 그 공문이 동래부에 도착하면 서둘러 동래부에서 전령이 있을 것이니,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쁜 일입니다. 재판께서도 서둘러 귀국하시고자 하셨는데, 대단히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다]읽으시면 곧바로 불태워 주십시오.

위의 사료에 따르면, 훈도는 한성에서 동래부로 내려올 때 좌의정⁵⁶⁾에게 오일잡물에게 오일잡물 교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두었으며, 한편으로 의원으로 좌의정 집을 드나드는 본인의 사촌 동생을 통해서도 동래부사의 추가 계문 없이 오일잡물 교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왕⁵⁷⁾에게 진언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는데, 좌의정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A). 그리고 결국 지난달(1736년 10월) 25일 국왕이 좌의정을 인견하는 자리에서 좌의정이 오일잡물

55) 『五日糧裁判記錄 二』, 1736년 11월 8일.

56) 김재로(金在魯).

57) 영조(英祖).

신규정을 구례로 돌리도록 건의하고, 국왕의 승낙을 받는 데에 성공했다고 한다. 또한 이 결정은 곧 비변사의 공문으로 동래부사에게 하달될 것이며, 동래부사는 전령을 통해 왜관 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전달되었다(B). 이렇게 추가 계문을 올리기 위한 동래부 측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좌의정의 건의와 이를 수용한 국왕의 결단으로 오일잡물 신규정은 구례대로 되돌아갔다. 1734년 11월부터 시작된 교섭이 우치노의 파견으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일거에 해결된 것이다.

마지막에는 다소 맥이 빠질 정도로 급격한 결말을 맞이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선 정부의 움직임이 재판의 파견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국왕이 방침 전환에 나선 계기가 된 것은, 훈도와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좌의정의 건의였다. 하지만 앞의【사료 6】에서 확인했듯이, 재판이 도착함으로써 조선 정부 내부에서는 오일잡물 신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일어났다. 이 논의에서는 조선 선박이 일본에 표착하면 일수에 제한 없이 구호물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일수를 제한하여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쓰시마 번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발언도 있었으며, 오일잡물에 관한 건은 앞으로 쓰시마 번과 교섭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선 정부가 오일잡물 규정을 복귀시킨 배경에는 이러한 논의와 인식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⁵⁸⁾

우치노가 재판으로 파견되기 전부터 이미 아메노모리가 주장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재판이 파견됨으로써 동래부 측에서는 재판의 귀국을 조건으로

58) 이 결정에 대해서는 이훈(1998, pp.40~41) 또한 재판의 도착에 따른 조선 정부 내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동래부사가 우치노의 도착을 보고한 시점부터 조선 정부에서는 앞으로 쓰시마 번과 교섭하여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후에 표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오일잡물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형성된 오일잡물 지급에 관한 인식이 이번 규정 복귀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둘러 교섭 타결에 협력하게 되었으며, 조선 정부에서도 오일잡물 문제에 관해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IV. 마치며

이상 1736년 오일잡물 교섭에서의 교섭 방침을 둘러싼 논의와 실제 교섭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쓰시마 번이 조선과의 교섭에 재판을 투입한 것은, 실제로도 다음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왜관과 조선 정부를 중개하는 동래부 측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했듯이 동래부 측에서는 재판 우치노가 교섭 타결과 함께 서둘러 귀국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확인한 뒤, 곧바로 조정으로 추가 계문을 올릴 준비에 들어갔다. 교섭 자체는 동래부사가 실제로 추가 계문을 올리기 직전 단계에서 국왕의 결단으로 종결되었지만, 동래부 측에서는 더욱 효과적인 내용으로 추가 계문을 올리기 위한 물밑 작업에 착수하는 등, 우치노에게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판이 파견됨으로써 쓰시마 번이 그 교섭 사안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조선 정부가 인식한다는 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치노의 왜관 도착 보고를 통해 조선 정부 내부에서 오일잡물 신규정의 고수를 둘러싼 논의가 일어났고, 향후 쓰시마 번과 교섭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교섭은 혼도와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좌의정이 국왕에게 규정 복귀를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국왕이 오일잡물 신규정을 구례대로 되돌린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재판의 파견으로 촉발된 조선 정부 내부의 논의와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은 간과할 수 없다.

근세 왜관에서는 쓰시마인들이 마음대로 정해진 경계를 벗어날 수 없었

다. 한성의 조정 고관들과 직접적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동래부사와도 왜관을 출입하는 왜학역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교섭 형태 안에서 조선 조정의 움직임은 끌어내고, 조정과 왜관 사이를 중개하는 동래부 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근세 조일 교섭에서 관수는 수행할 수 없는 재판의 고유 영역이었으며, 동시에 ‘외교의 요체로서의 재판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한 가지 상기해두고 싶은 것은, 오일잡물 규정을 구레대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중대한 교섭 사안을 앞에 두고, 번 당국과 아메노모리가 ‘누구’를 교섭에 임하게 할 것인가가 아닌, 처음부터 ‘어느 직책’을 교섭에 임하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던 점이다. 아메노모리 자신이야말로 당시 쓰시마 번에서 손꼽히는 ‘조선통’이었다고 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위의 논의에서는 예를 들어 ‘아메노모리가 교섭에 임한다’와 같은 방안은 처음부터 논의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재판은 그 직책에 임명된 ‘사람’이 아닌, 재판이라는 ‘직책’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만으로도 조선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조선 사정에 능통한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으로서 조일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던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2년 11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22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2월 9일

참고 문헌

- 이성무, 최진옥, 김희복(편),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雜科榜目の電算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이혜진, 「17세기 후반 朝日外交에서의 裁判差倭 성립과 조선의 외교적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제8집, 1998.
- 이 훈, 「18세기 중엽 일본 표선에 대한 雜物(五日糧) 지급과 조·일 교섭왜곡」, 『한일관계사연구』 제9집, 1998.
- _____,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 윤유숙, 「조선후기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활동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62집, 2018.
- _____, 「18세기 후반 쓰시마 간사재판(幹事裁判)의 교섭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제66집, 2019.
- 이형주, 「18세기 말 裁判役의 名代 파견에 대해」, 『한일관계사연구』 제74집, 2021.
- 윤유숙, 「역지통신 교섭기 간사재판 시게마쓰 고노모(重松此面)의 활동 검토」, 『향도부산』 제43호, 2022.
- 長正統, 「日鮮關係における記録の時代」, 『東洋學報』 50卷4號, 1968.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泉澄一, 「對馬藩士の朝鮮使行と「扶助」について」, 『史泉』 81卷, 1995.
- 田代和生,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 ゆまに書房, 2011.
- 李炯周, 「18世紀の倭館における日朝交渉と對馬藩の裁判役」, 『名古屋大學人文學フォーラム』 2號, 2019.

_____, 「一七世紀の裁判役—對馬藩と朝鮮との外交折衝擔當官—」, 『名古屋大學人文學フォーラム』5號, 2022a.

_____, 「近世日朝關係と對馬藩の裁判役—日朝外交折衝における裁判役の役割を中心に—」, 名古屋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博士論文, 2022b.

〈인용 및 참고 자료〉

『每日記 九』, 관수: 松尾左,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每日記 六』, 관수: 嶋雄八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每日記 七』, 관수: 嶋雄八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每日記 八』, 관수: 嶋雄八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每日記 九』, 관수: 嶋雄八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每日記 壹』, 관수: 多田兵左衛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34.

「脇浦へ令欠乗候船二五日を限り其餘者五日次不被相渡候事」, 『分類紀事大綱二十四』,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754, 소장문서번호: 4520.

『朝鮮方日帳〈合十三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699, 소장문서번호: 4163.

『日帳〈合十二冊〉』,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등록번호: MF0000699, 소장문서번호: 4164.

『承政院日記』, <https://db.itkc.or.kr/dir/item?itemId=ST#/dir/list?itemId=ST&gubun=book> (검색일: 2022. 11. 28)

『五日糧裁判記録 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五日糧裁判記録 二』,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WA1-6-14.

〈참고 웹사이트〉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검색일: 2022. 11. 28).

『조선시대 대일외교 용어사전』,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BZ-2101> (검색일: 2022. 11. 28).

Abstract

About the dispatch of Tsushima domain's Saihan in the mid-18th century

: A case study of relief supplies negotiations in 1736

LEE Hyeongju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sushima Domain's dispatch of Saihan(Tsushima Domain's director for Diplomatic Negotiations) separately in addition to Kanshu(the head of Waegwan) in negotiations with Joseon by analyzing the prior discussion and actual aspects of Oiljabmul(relief supplies) negotiation in 1736. There are two main effects of dispatch of Saihan.

First, Saihan could draw cooperation from the Dongnaebu side. When Saihan was dispatched, Dongnaebu actively cooperated to return Saihan quickly to Tsushima. Next, Saihan could enable the Joseon Dynasty take action. When the Joseon government received a report on the dispatch of Saihan, they recognized that Tsushima Domain was putting emphasis on the negotiations. Through this recognition, the negotiations could be concluded quickly. These effects could not be expected from Kanshu, a resident of Waegwan.

In the mid-18th century, Saihan could effectively lead negotiations with Joseon by the "position itself" rather than "who is appointed".

key words

Saihan, Jaepanchawae, Wakan, Waegwan, Korea-Japan Diplomacy

www.kci.go.kr